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국공항공사의 재원으로 시행·투자한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해당 토지와 시설을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(주서본 참조).

(요건의 명확화를 위해 용어 정리 필요)

- 개정안은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¹⁾ 개발사업

1)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(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**개발사업을 시행**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·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(공항의 유지·보수를 위한 시설,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에 투자하는 경우,²⁾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 및 시설을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개정안은 공사 재산으로 귀속되는 요건을 정함에 있어 현행 「공항시설법」이 규정한 “개발사업”을 인용함과 동시에, 개정안도 “개발사업”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, 그 의미와 대상이 다소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가져옴(아래 표 참조).

즉, 공사 재산이 귀속되는 2가지 요건인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“시행한 개발사업”과 “투자한 개발사업”에 대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,

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은 같은 법 제5조에서 “개발사업”을 약칭하여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의 중복 문장인 “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”^{a)}이라는 표현과³⁾ “개발사업”^{b)} 약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제5조(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에 따른 건설기술·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기술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2) 「**공항시설법**」 제21조(투자허가·시설물의 귀속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(공항의 유지·보수를 위한 시설,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. 다만,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.
- 3) 「**공항시설법**」 제5조는 “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”로 약칭하고 있어, 「**공항시설법**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“개발사업”은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이미 의미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이 규정한 “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”은 중복 문장이이어서 삭제 가능함.

<개정안 내용 중 “개발사업” 용어 정리 필요>

개 정 안(신 설)
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) 공사가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<u>개발사업</u> [㉠] (이하 “ <u>개발사업</u> ” [㉡] 이라 한다)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<u>개발사업</u> [㉢] 에 투자한 경우 해당 <u>개발사업</u> [㉣] 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구 분	“개발사업”의 의미	해당조문 내용 및 해석	해석 시 고려 사항
㉠	「공항시설법」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	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 ⁴⁾	「공항시설법」 제5조 이하 “개발사업” 약칭 사용
㉡	「공항시설법」 제5조 +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②에 따른 개발사업	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장관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⁵⁾	개정안에서는 이하 “개발사업”으로 약칭
㉢	「공항시설법」 제21조①에 따른 개발사업	해석1) 개발사업 [㉤] 해석2)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장관 허가를 받은 투자 대상 개발사업	개정안 약칭에 따른 개발사업 [㉤] 인지,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장관 허가를 받은 투자 대상 개발사업인지 모호
㉣	해당 개발사업	해석1) 개발사업 [㉤] 해석2) 개발사업 [㉢] 해석3) 개발사업 [㉥] + 개발사업 [㉢]	개정안 약칭에 따른 “개발사업” [㉤] 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

4) 자세한 조문은 각주 1) 참조

5) 자세한 조문은 각주 1) 참조

＜수정의견＞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) 공사가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와 시설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의2(토지와 시설의 귀속 등) ----- ----- 받아 개발사업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